

합격 용기등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(제41조제2항 관련)

1. 제조·수리·수입검사에 합격한 용기등에 대한 각인·표시

가. 용기

검사에 합격한 용기등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인 또는 표시를 할 것. 다만, 각인하기가 곤란한 용기의 경우에는 다른 금속박판에 각인한 것을 그 용기에 부착하는 것으로 용기에 대한 각인에 갈음할 수 있다.

1) 용기(접합용기 또는 납붙임용기는 제외한다)에는 그 어깨부분 또는 프로텍터부분 등 보이기 쉬운 곳에 다음과 같이 "ㄱ"자의 각인을 한다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하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.

ㄱ 크기: 6mm×10mm(다만, 내용적 5L 미만인 용기의 경우에는 3mm×5mm)

가) 재충전금지용기

나) 고압가스가 충전되어 수입되는 용기(그 가스를 사용할 때까지만 부착한다)

2)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에는 그 제조과정 중에 다음과 같이 "ㄱ"자의 표시를 할 것



크기: 15mm×15mm

백색바탕에 흑색문자(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색상을 제한하지 아니한다)

나. 용기부속품

검사에 합격한 용기부속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"ㄱ"자의 각인을 할 것

ㄱ 크기: 3mm×5mm

다. 냉동기

검사에 합격한 냉동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"ㄱ"자의 각인을 할 것

ㄱ 크기: 6mm×10mm

라. 특정설비

검사에 합격한 특정설비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인을 할 것

1) 저장탱크, 차량에 고정된 탱크, 기화장치 및 압력용기에는 다음과 같이 "ㄱ"자의 각인을 한다. 다만, 재검사에 불합격되어 수리를 한 저장탱크의 경우에는 "ㄱ"자의 각인과 함께 다음과 같이 "R"자의 각인을 하고, 복합재료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다른 금속박판에 각인한 것을 그 용기에 부착한다.

ㄱ 크기: 6mm×10mm

㉔ 원의 바깥지름: 10mm

2) 냉동용특정설비에 대해서는 다목의 냉동기 표시방법을 준용한다. 다만, 각인하기가 곤란한 냉동용특정설비의 경우에는 다른 금속박판에 각인한 것을 부착할 수 있다.

3) 그 밖의 특정설비

1)에 규정된 것 외의 특정설비에는 다음과 같이 “㉔” 자의 각인을 한다.

㉔크기: 4mm×7mm(안지름이 25mm를 초과하는 특정설비)

㉔크기: 3mm×5mm(안지름이 25mm 이하인 특정설비)

2. 재검사에 합격한 용기 및 특정설비에 대한 각인 등

가. 각인

재검사에 합격한 용기·용기부속품 및 특정설비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과 제 1호가목·나목 및 라목에 규정된 “㉔”자의 각인을 할 것. 다만, 각인이 곤란한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재검사기관이 하는 합격증명으로 각인에 갈음할 수 있다.

1) 재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약호

2) 재검사연월

3) 충전하는 가스를 변경하고자 하는 가스의 명칭(충전하는 가스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하며, 전회에 각인된 충전가스의 명칭은 두 줄의 평행선으로 지워야 한다)

나.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대한 도색 등

재검사에 합격한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는 그 외면에 은백색의 도색을 하고 충전가스의 명칭 및 충전기한을 표시할 것